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계415-	(전화번호)	전결규정 조 항 전결사항
처리기간	13	시 장	
시행일자		결재 1977.6.18 제2부시장	611 6.18
보존년한			

보조기관	제2부시장 전결 도시정비국장 도시계획과장 김경중	지역계획계장	협조	법무담당관 (고시안심사) 법무심사필 구획정리과장
기안책임자	김창선	77. 6. 임재남		

경유 수신 참조	각 안 참 조	발신		통제	19

제목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 변경 지적승인

제 1 안 내 부 결 재 고시제 197 호

1. 당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중 건설부 고시 제37호 (76. 3. 27)로 변경 결정 고시된 일부지역 에대해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41호 (77. 3. 16)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고저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적승인 조서

변경구분	위 치	면 적(m²)	비 고
녹지→생산녹지	영등포구 옥동.신정동일대	3.350.000	건고시 37호
녹지→생산녹지	영등포구 등촌.마곡.내발산. 외발산. 공항동일대	3.450.000	(76.3.27)

첨 부 1. 건고시 37호 1부

제 2 안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 . . 도시계획 용도지역 . 변경 지적 승인 . . .

정서 / 검인 / 발송

1. 건설부고시 제37호 (76.3.27)로 일부 변경 결정 고시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적 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41호 (77.3.16)에 의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출장소)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고시안심사	1977.6.18	제 184호
심사자	담당	주무담당관
(서명)	권결	(서명)

1977.6.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적 승인 조서

변경구분	위치	면적(m²)	비고
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영등포구 목동.신정동 일대	3.350.000	
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영등포구 등촌.마곡. 내발산. 외발산.공항동일대	3.450.000	

(도면 생략)

제 3 안

수 신 건설부장관 발신 시장

제 목 동 건

1. 건설부 고시 제37호 (76.3.27)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된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41호 (77.3.16)의 규정에의거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 표시와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보고합니다.

첨 부 고시문 사본 및 관계도면 1부

제 4 안

수 신 영등포구청장. 양서출장소장 발신 시장

참 조 도시정비과장

156

제 목 동 건

1. 건설부 고시 제37호. (76.3.27)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된 지역에 대해 지적 승인 하였기 통보하니 관계 도서를 귀청(출장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할것이며 제증명 발급및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첨 부 고시문사본 및도면 1부

제 5 안

수 신 총무처 장관 (시 : 종합공보실장) 발신시(과)장

제 목 관(시)보 게재 의뢰

다음과 같이 관(시)보 게재를 의뢰 하오니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시)보 게재 구분 : 고시

나. 관(시)보 게재건명 :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 지적승인

다.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 제13조

첨 부. 고시문 사본 2부(1부).